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4 부

판 결

사 건	2019구합654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9. 10. 22.
판 결 선 고	2019. 11. 2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8. 9. 10.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재산세 40,389,310원(지방교육세 6,731,550원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0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5. 5. 22. 주택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2015. 7. 30. [redacted]구 B 외 2필지 9,46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,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기재와 달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,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뒤 그에 따라 세율을 계산하여 2018. 9. 10. C에게 2018년 귀속 재산세(토지) 40,389,310원(지방교육세 6,731,550원 포함)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. 12. 7.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2019. 2. 11. 이를 기각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3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아 일반 나대지와 동일한 정도의 담세력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 또한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당시 공부상 기재가 '묘지'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정도 존재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기재와 달리 나대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0

이 사건 처분은 재산세 과세 원칙인 현황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.

4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,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,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·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나. 그런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에 따라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법에 따라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될 경우 원고가 결과적으로 재산세 등 상당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,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다.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,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

5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0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0

[별지]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106조(과세대상의 구분 등)

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

1. 종합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

나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

제107조(납세의무자)

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
3. 「신탁법」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·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: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.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.

■ 지방세기본법

제18조(신의 · 성실)

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119조(재산세의 현황부과)

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. 끝.